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3호 2022. 12. 12.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24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25호 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5
- 정선군 조례 제2926호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14
- 정선군 조례 제2927호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17
- 정선군 조례 제2928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7
- 정선군 조례 제2929호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40
- 정선군 조례 제2930호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48

- 정선군 조례 제2931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56
- 정선군 조례 제2932호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66
- 정선군 조례 제2933호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70
- 정선군 조례 제2934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73
- 정선군 조례 제2935호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9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09.)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4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로, “의원(이하 “의원” 라 한다)” 을 “의원”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 ” 을 “의원” 이”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36조 관련 별표 5” 를 “제33조 관련 별표 6”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23년	월 2,268,000원으로 한다.
2024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36조</u>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33조</u>----- <u>의원</u>----- ----- ----- ----- ----- ----- .</p>
<p>제2조(의정활동비) ①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조(의정활동비) ①----- ----- “의원” 이-----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여비) ①·② (생략)</p> <p>③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u>제36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u>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p>	<p>제4조(여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33조 관련 별표 6</u>----- ----- <u>지급기준</u>----- ----- ----- .</p>

□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현행화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목적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2023년~2026년도 월정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 규정 (별표)
 - 1) 2023년도: 연 2,721만원(월 227만원)
 - 2)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 다. 여비지급기준 근거조항 현행화(안 제4조제3항)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으로 변경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5호

정선군 주요관광지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인상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원)

시설명	비 수 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데크	30,000	40,000	40,000	
오토캠핑	40,000	50,000	50,000	카라반 및 트레일러 불가

1. 시설사용 기준(1일)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 성수기 : 매년 7. 1 ~ 8. 31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은 사용금지

제2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모노레일·카트 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원)

구 분		화 암 동 굴			모 노 레 일			카 트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1 인 승	2 인 승	유 아 용
일 반	개인	7,000	5,500	4,000	3,000	2,000	1,500	12,000	17,000	10,000
	단체	6,500	5,000	3,500						
· 폐광지역 주민 · 명예군민 · 자매결연도시민 · 정선군 숙박 관광객	개인	5,500	4,500	3,500						
	단체	5,000	4,000	3,000						
투표자	개인	5,000	4,000	2,000						
	단체	4,500	3,500	2,000						

[별표 2]

야영장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비 수 기		성수기	비고
	주중	주말·공휴일		
노 지	-	-	-	<삭제>
테 크	30,000	40,000	40,000	
캐라반	3인용	-	-	<삭제>
	4인용	-	-	<삭제>
	6인용	-	-	<삭제>

1. 시설사용 기준(1일)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 성수기 : 매년 7월~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제3조(「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별표 2]

시설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비수기		성수기	비고
		주중	주말 공휴일		
산막	26㎡ (8평형)	40,000	60,000	60,000	
	56㎡ (17평형)	80,000	120,000	120,000	
	79㎡ (24평형)	100,000	170,000	170,000	
	195㎡ (59평형)	250,000	350,000	350,000	
데크		30,000	40,000	40,000	

1. 시설사용 기준(1일)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2. 기간 적용

- 성수기 : 매년 7월~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비수기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 비수기 주말 :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 공휴일 당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3. 캠핑장 내 전기사용

-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

제4조(「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표 2]

야영장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	비수기		성수기 (7~8월)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데크	30,000원	40,000원	40,000원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 전일

제5조(「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설명	야영테크			노지야영장			비고
	비수기		성수기 (7~8월)	비수기		성수기 (7~8월)	
	평일	주말·공휴일		평일	주말·공휴일		
야영장	30,000	40,000	40,000	20,000	30,000	30,000	텐트 1조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2. 성수기는 7. 1.부터 8. 31.까지로 하며, 비수기는 9. 1.부터 다음 해 6. 30.까지로 한다.
3. 비수기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5. 전기사용은 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소형가전만 사용(총 합계 500W 미만) 가능하며,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 제안이유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야영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였는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외 5개소의 주요시설물 이용요금 인상

1) 대상시설

번호	시설명	위치	주요시설물	비고
1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정선읍 가리왕산로 570-5 일원	테크,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등	문화관광과
2	화암약수·동굴·카트체험장	화암면 화암리 1179, 540 일원	테크, 편의시설 등	"
3	아우라지 관광지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일원	테크, 편의시설 등	"
4	도사곡휴양림	사북읍 지장천로 436-27 일원	테크, 펜션, 편의시설 등	"
5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정선읍 동강로 2908 일원	테크, 편의시설 등	환경과
6	동강전망자연휴양림	신동읍 고성리 산17 일원	테크, 편의시설 등	산림과

나. 세부 변경 내용

1) 회동국민여가 캠핑장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비수기		성수기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오토캠핑장	40,000	50,000	50,000	신설

2) 화암동굴 관람료 및 모노레일·카트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고
일반	개인	5,000 → 7,000	3,500 → 5,500	2,000 → 4,000	
	단체	4,500 → 6,500	3,000 → 5,000	1,500 → 3,500	
폐광지역주민 /명예군민 /자매결연도시민 /정선군속박 관광객	개인	3,500 → 5,500	2,500 → 4,500	1,500 → 3,500	
	단체	3,000 → 5,000	2,000 → 4,000	1,000 → 3,000	
투표자	개인	3,000 → 5,000	2,000 → 4,000	-	
	단체	2,500 → 4,500	1,500 → 3,500	-	

(단위 : 원)

구 분	어른 / 1인승	청소년·군인 / 2인승	어린이 / 유아용(신규)	비 고
모노레일	3,000	2,000	1,500	
카트	12,000	17,000	10,000	

3) 화암동굴·약수, 아우라지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노지	20,000 → 0(삭제)	20,000 → 0(삭제)	20,000 → 0(삭제)	노지삭제	
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캐라반	3인용	60,000 → 0(삭제)	70,000 → 0(삭제)	100,000 → 0(삭제)	캐라반 삭제
	4인용	70,000 → 0(삭제)	80,000 → 0(삭제)	120,000 → 0(삭제)	
	6인용	80,000 → 0(삭제)	100,000 → 0(삭제)	150,000 → 0(삭제)	

4) 도사곡휴양림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5) 동강생태체험학습장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6)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영장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야영테크	20,000 → 30,000	30,000 → 40,000	30,000 → 40,000	
노지야영장	10,000 → 20,000	20,000 → 30,000	20,000 → 30,000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6호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5조 관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2.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입산신고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4.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취소, 경정 등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3조, 제4조
5. 지방세 체납금 징수 및 지방세 관련 체증명 등 민원처리	지방세 기본법 제6조 정선군 군세 기본조례 제2조
6. 불용품 매각처리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7.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8. 대마취급자(대마재배자) 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9. 건축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수리 및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및 용도변경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 건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의 조치에 따른 시정명령·고발조치 및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82조제3항
10. 건축물의 해체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11.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12. 먹는물 공동시설 운영관리	먹는물 관리법 제8조
13.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정선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
14.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법 제36조, 제47조
15.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 노상 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	도로법 제75조
16. 장애인등록 및 취소 등 사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3

□ 제안이유

군수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외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하며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행정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 2)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 노상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
- 3) 장애인등록 및 취소 등 사무

나. 사무별 근거 법령 수정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7호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 거주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주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관한”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u> 2. <u>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3. <u>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u> 4. <u>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u> 5. <u>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u>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u>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u></p>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u>법 제9조 제2항에 따라</u> ----- ----- ----- -----.</p>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u>청구인대</u></p>	<p>제6조(서명요청방식) ①-----</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서명요청기간) <u>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u></p>	<p>제7조(서명요청기간) <u>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u> ----- ----- -----.</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u>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u>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u>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②<u>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 ----- ----- . <u>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명</u> 2. <u>생년월일</u> 3. <u>주소 또는 체류지</u> 4. <u>서명 연월일</u> <p>②----- ----- . <u>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반 단</u> <u>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u></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u>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u>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u></p> <p>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u>법 제12조제1항에 따른</u> ----- ----- <u>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u>----- ----- ----- -----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u>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u></p> <p>② <u>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u></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u>법 제12조제3항에 따라</u> ----- ----- ----- <u>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u> ----- -----.</p> <p>② ----- <u>생년월일을</u> ----- ----- ----- -----.</p>

현 행	개 정 안
<p>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른 ----- -----.</p>
<p>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제1항에 따라 ----- ----- --.</p>
<p>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p>	<p>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 -----.</p>
<p>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 ①-- ---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 ----- -----.</p>
<p>1. ~ 4.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른 ----- ----- -----.</p>
<p>제13조(처리기간) ① (생략)</p> <p>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p>	<p>제13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안
<p>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12조제7항의 규정</u>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p>	<p>----- ----- ----- <u>법 제12조제7항에 따른</u> ----- ----- -----.</p>
<p>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u>한하여</u>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 ----- ----- ----- <u>한정하여</u> ----- -----.</p>
<p>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u>법 제22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u>법 제22조제2항에 따라</u> ----- ----- -----.</p>
<p>②<u>법 제22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p>	<p>②<u>법 제22조제2항에 따라</u> ----- ----- ----- ----- -----</p>

현 행	개 정 안
<p>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p> <p>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u>법 제10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p>②<u>법 제10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③<u>제6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p>④<u>제8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⑤<u>법 제12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p> <p>⑥<u>법 제12조제4항의 규정</u>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p>	<p>-. ----- ----- ----- -----.</p> <p>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u>법 제10조제1항에 따른</u> ----- ----- ----- <u>따른다.</u></p> <p>②<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u>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u>따른다.</u></p> <p>③<u>제5조제2항에 따른</u> ----- ----- ----- <u>따른다.</u></p> <p>④<u>제7조제2항에 따른</u> ----- ----- <u>따른다.</u></p> <p>⑤<u>법 제12조제1항에 따른</u>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u>따른다.</u></p> <p>⑥<u>법 제12조제4항에 따른</u>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u>따</u></p>

현행	개정안
<p><u>식에 의한다.</u></p> <p>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u>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u>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u> 광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p>	<p><u>른다.</u></p> <p>제16조(공표방법 등) ----- ----- ----- <u>법 제13조제1항에 따른</u> ----- ----- <u>법 제13조제2항,</u> <u>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u> <u>및 제5항에 따른</u> ----- ----- --.</p>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정 선 군 수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 선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제안이유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22.4.26.)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관련규정 정비(안 제2조제4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2항)
-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련 규정 삭제
- 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다. 주민투표의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제1항)
- 정보시스템(*전자서명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마.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제2항)
-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
- 바.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8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년활동 거점 공간 위치
(제5조제2항 관련)

구분	청년활동 거점공간	위 치	비고
1	고한읍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46	
2	사북읍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6, 사북2리 마을회관 2층	
3	남면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남면 도원2길 33, 제1동 2층	
4	임계면 거점 공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10길 24-7	

제안이유

청년활동 거점 공간 구성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가 완료되어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규정 일부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청년활동 거점 공간 위치 관련 별표 정비(안 제5조제2항)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29호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선군수(이하 “군수”로 한다) 소속으로 정선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 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

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정선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정선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정선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정선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정선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관·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전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 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② 군수는 기부금계좌를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공포, ‘23.1.1. 시행) 및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선정, 기금의 모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의 선정 등

(안 제2조 ~ 제5조)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다.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안 제8조 ~ 제23조)

라. 부칙(안 제1조 ~ 제4조)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30호

정선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 급식지원을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 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 이라 한다)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급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이장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 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의 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

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이용
2.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정선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를 통한 급식지원
3. 정선군 급식지원 협력업체를 통한 도시락 또는 부식의 배달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지원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급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구원이 급식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의 친인척, 이웃, 통장·이장,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신청하거나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생·안전교육 등)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선군으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선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이유

관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31호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75세”를 “7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매분기”를 “매 반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날”을 “반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기”를 “반기”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초고령 어르신”이란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 중 <u>75세</u>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p> <p>2. “지급기준일”이란 <u>매분기</u> 첫 달 5일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 <u>7</u> <u>0세</u> -----.</p> <p>2. ----- <u>매 반기</u> -----.</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 및 대상 등) ①·② (생 략)</p> <p>③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군 및 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원을 중지한다.</p>	<p>제4조(지원 및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반기</u> ----- -----.</p>
<p>제5조(지원방법·기준 및 시기)</p> <p>① (생 략)</p> <p>② 이용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분기별</u>로 지급하며,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으로 한다.</p> <p>3. 지난 <u>분기</u>에 지급받지 않은</p>	<p>제5조(지원방법·기준 및 시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반기별</u>----- ----- -----.</p> <p>3. --- <u>반기</u>-----</p>

현 행	개 정 안
<p>때에는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수 없다.</p> <p>4. (생 략)</p> <p>③ (생 략)</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권

< 앞 면 >

< 뒷 면 >

<p>20 년도 반기 <u> </u> NO. <u> </u></p> <p>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권</p> <p>실버에티켓</p> <p>금액</p> <p> 정선군</p>	<p>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 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정선군 관내 목욕, 이·미용서비스 제공업소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발행날짜 : 20 . . . / 유효기간 : 20 . . . 까지 배 부 처: 읍면행정복지센터</p>
---	---

[별지 제4호서식]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록
및 이·미용권 발급대장**
(반기)

결 재	주무관	팀장	과장

일자	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제작매수										
배부매수										
반납매수										
비고										

□ 제안이유

- 가. 고령화 가속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필요성 대두
- 나.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대상 연령 확대를 통한 질병예방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안 제2조)
 - “75세” 를 “7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매분기” 를 “매 반기” 로 한다.
- 나. 지원 및 대상(안 제4조)
 - “날” 을 “반기” 로 한다.
- 다. 지원방법, 기준 및 시기(안 제5조)
 - “분기별” 을 “반기별”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기” 를 “반기” 로 한다.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32호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제5조(지정절차)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선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용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5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사업자번호

- -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황	업소명			대표자	
	업종			휴대폰	
	주소				
주요 취급품목 가격	품목	가격(원)	품목	가격(원)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부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			
	가격동결(동결 기간)	-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미이행 ()			
	반값세일행사 참여 여부				
	기타 물가안정 정책 동참 여부				
서비스 수준	종사자 친절도	상, 중, 하 설명 :			
	영업장 청결도	상, 중, 하 설명 :			
가점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청소년 할인() / 특정시간대 할인()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시장, 도지사, 장관()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제안이유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근거 마련 및 지역물
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안 제3조)
- 나. 지정제외 사유 및 지정절차(안 제4조 ~ 제5조)
- 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라. 모니터요원의 운영(안 제10조)

제285회 정선군의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33호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정선군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으로 정선군 관내로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
2. 전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
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기타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5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공공체육시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
- 2. 선수단에 대한 숙식비 및 의료비 일부 지원
- 3. 그 밖에 선수단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팀 구성·운영 등)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을 조성하고 체육분야의 전문성을 확대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스포츠마케팅의 용어 규정(안 제2조)
- 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안 제3조, 제5조)
- 다. 체계적인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팀(직원) 구성(안 제6조)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1. 11.)에서 의결된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34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입장”이란 같은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6. “체육행사”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7. “일반행사”란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선군 체육시설물(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사용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연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는 것으로 허가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세워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시설의 개수·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군수 및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시설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수영장 및 정선골프연습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장일(이 경우 미리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 중 정선종합경기장, 정선국민체육센터, 정선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상행위 사용료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감면

- 가.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어린이, 노인을 위한 행사
- 다. 국가, 도 및 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 정선군체육회, 강원도교육청, 정선군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자
- 라. 유소년, 초·중·고·대학팀·실업팀 및 프로팀 등의 전지훈련
- 마.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면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다. 가, 나 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라.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11.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③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은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 전부
3. 천재지변 및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비의 설치와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한다.

제16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

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관리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에 한정하여 전기료 기본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16. 정선골프연습장 운영·관리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및 위탁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및 위탁관리 등으로 본다.

[별표 1]

체육시설 적용범위

- 1. 체육시설 : 정선종합경기장 내의 경기시설(주경기장, 정선골프연습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 인라인 및 농구장), 정선국민체육센터(체육관, 수영장),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궁도장 등)
-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에 딸려 설치된 각종 시설물, 주차장,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기	06:00~09:00	06:00~09:00
주간	09:00~18:00	09:00~17:00
야간	18:00~22:00	17:00~22:00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

○ 정선종합경기장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체육행사	97,000	126,000	
	일반행사	180,000	230,000	
	연습사용	90,000	114,000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체육행사	30,000	40,000	
	일반행사	60,000	80,000	
	연습사용 (단체)	6,000	6,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2,000	2,000	2시간 기본
육상트랙	체육행사	38,000	51,000	
	일반행사	92,000	127,000	
	연습사용 (단체)	6,500	7,3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400	1,600	2시간 기본
체육관	체육행사	74,000	89,000	
	일반행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 (단체)	81,000	91,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000	1,300	2시간 기본
실외인라인장 (농구장 포함)	무 료			
테니스장숙소동	2인1실	4인1실		
	15,000	30,000		

※ 1일 기준

○ 정선종합경기장 내 정선골프연습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구분	이용자	이용료	비 고
수시 이용자	1회	어른	10,000	○수시 및 쿠폰이용자(1회 사용시간) : 90분(300개) ○정기이용자(1회 사용시간) : 120분(400개) ○정기이용 세부기준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 ○사용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의 범위 내 에서 조정할 수 있음.
		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정기 이용자	1개월	어른	100,000	
		청소년	50,000	
		어린이	30,000	
쿠폰 이용자	3개월	10매	100,000	
		20매	150,000	

※ 제4조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이용 구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 고	
수영장	개인 월 정기이용	52,500	41,000	30,000		
	개인 일일이용	2,500	2,000	1,400		
	단체 일일이용	2,000	1,300	1,000	20명 이상	
	수강료(주3회)	30,000	30,000	30,000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150,000		200,000		
	일 반 행 사	200,000		250,000		
체육관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74,000		89,000		
	일 반 행 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단체)	81,000		91,000		2시간기본
	연습사용(개인)	1,000		1,300		2시간기본
비 고	수영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 정선군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수량/ 단위	사용료	비 고
전 기	1 KW당	관허요금	기본요금 + (시간당사용요금 x 사용시간)
수 도	1 일	20,000	입장객 500명이하
		40,000	입장객 501~1,000명이하
		60,000	입장객 1,001~5,000명이하
		80,000	입장객 5,001~10,000명이하
		100,000	입장객 10,000명이상
샤 위	1인 1회	400	
마 이 크	1일 1대	5,000	
방송음향	1 일	40,000	

[별표 4]

중계방송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TV 중계방송	체육경기	국내	25,000	
		국제	50,000	
	체육경기 외	국내	20,000	
		국제	50,000	
인터넷 중계	체육경기	국내	20,000	
		국제	45,000	
	체육경기 외	국내	20,000	
		국제	45,000	
지역제한 TV 중계방송	체육경기	국내	15,000	
		국제	25,000	
	체육경기 외	국내	10,000	
		국제	20,000	
영화촬영			50,000	
경기촬영			30,000	
TV 녹화			TV 중계방송의 50%	
라디오 녹음			라디오 중계방송의 50%	

※ 사용료는 행사 주관자가 책임 납부

[별표 5]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수량/단위	사용료	비 고
프로그램 판매행위	반입부수	가격 총액의 20% 상당액	
시설물에 부착·진열· 게시되는 광고물	12㎡이내 개당	5,000	1일 기준
	12㎡초과 개당	10,000	
	현수막 m ² 당	1,000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에 의한 광고 행위	개당 일간	5,000	
전광판광고물	1회 당	10,000	

※ 사용료는 행사 주관자가 책임 납부

[별지 제1호 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명 (시간) 2. 음향 (일) 3. 샤워 (명) 4. 수도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박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타 ()						
		상행위	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 시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 (개) 3.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개) 4. 전광판 광고물 (회)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일 시간)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								
입장료	어른 : 원, 어린이 : 원,	청소년 : 원 단체 : 원	무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시간) 2. 음 향 (일) 3. 샷 위 (명) 4. 수 도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일 시간)
변경신청 내용			
차액 환불계좌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p>「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정선군수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취소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2. 일반행사 3. 연습사용		행사명											
사용 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시간) 2. 음 향 (일) 3. 샷 위 (명) 4. 수 도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사용 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일 시간)
취소사유															
환불계좌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p>「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정선군수 귀하</p>															

[별지 제4호 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시간) 2. 음 향 (일) 3. 샷 위 (명) 4. 수 도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요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일 시간)
감면사유						
입증서류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제안이유

- 가. 정선군 골프연습장 신축에 따른 향후 위탁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설 및 대행사업 위탁 근거 명시
- 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사용자 및 이용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정선군 골프연습장의 운영요금 및 위탁 기준 마련(별지 3 및 부칙)
- 나. 사용허가와 이용요금 및 감면기준 등 정비(안 제4조, 제10조, 제12조)
- 다.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점검기준 마련(안 제20조)
- 라. 공공체육시설의 적용범위 및 사용시간 명시화(별지 1, 2)

제285회 정선군의회(2022. 12. 02.) 및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12. 09.)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35호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사람
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책무)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지원사업
3.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4. 영농자재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사업
9.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정선군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 및 청년농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다.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